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황영호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20 - 87 |
|----------|-----------|

발의일자: 2020. 9. .

발의자: 황영호, 박주선, 김현희, 정정희  
송영섭, 송순효, 박성호

## 1. 의결주문

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의원의 징계·자격·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,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,
- 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원이 있어,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 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 제5항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」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## □ 설치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## □ 위원구성

-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한다.

## □ 위원선임

-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
-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.

## □ 활동기간 ○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.

# 【관계법령】

## 《지방자치법》

제57조 (윤리특별위원회)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 《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》

제9조 (특별위원회)①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 (최장 6개월 이내) 활동내용,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⑤의회는 의원의 징계·자격·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⑥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⑦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## 《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》

제2조 (구성)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